

의안번호	2205636
의 퇴 인	박정현 의원
회 답 일	2024. 12. 5.
추 계 번호	24F5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인상 및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3년 연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3년간 총 28.5억원(연평균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감면을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동 비용추계는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만 반영하였으므로, 실제 세수감소 효과에 비해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38조 제4항)	-9.5	-9.5	-9.5	-28.5	-9.5
- 취득세	-2.5	-2.5	-2.5	-7.5	-2.5
- 재산세	-7.0	-7.0	-7.0	-21.0	-7.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8조제4항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상향조정 및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규정 3년 연장 - 감면율: (현행) 취득세 15%(감염병전문병원 25%), 재산세 25%(감염병전문병원 35%) → (개정안)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7.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8조제4항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19~2023년 재단법인(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사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2019~2023년)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2.5억원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 -7.0억원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종교단체가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인상할 경우 지방세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감면율 상승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2023년 말 신설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현재 시점에서는 종교단체 외의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함
 - 참고로 재단법인의 의료기관 수는 2024년 10월말 기준 173개로 집계되나, 이 중 종교단체에 속한 기관의 현황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표 2] 재단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구분별 현황(2024.10.)

(단위: 개)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정신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원	한방 병원	한의원
재단법인	173	2	21	18	11	5	68	2	10	0	22	14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당초 종교단체(재단법인인 종교단체로 한정)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규정하다가, 2023.12.29. 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취득세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25%), 재산세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35%) 감면
 - 단,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일반 재단법인에 대해 우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있음
 - (취득세) 취득세 감면율은 2020년까지 최대 40%(시지역 20%)로 유지되다가, 2021년 이후 감면율 3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40%)로 축소
 - 2020년까지는 감면율을 40%(시 지역 2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최대 감면율(기타지역 40%/시 지역 20%) 적용을 가정
 - (재산세)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
 - 감면율은 2016년까지 75%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는 50%(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60%로 감면율 상향)로 축소
 -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

나. 감면실적

- 2022년 기준 재단법인(종교단체)의 의료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조정 감면실적은 연평균 2.3억원 수준, 재산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5.3억

원 수준

-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은 202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로서는 감면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실적만 살펴봄
- (취득세)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2.5억원 수준
 - － (감면율) 2016년 이전: 75% → 2017년~2020년: 50% → 2021년 이후 : 30%

[표 4] 재단법인(종교단체)의 의료시설 취득세 감면 실적 : 2019~2023년
(단위: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액	0.4	3.6	4.6	1.7	2.1
건수	2	14	19	8	9
감면율	(시지역)20 (그 외)40	(시지역)20 (그 외)40	30	30	30
조정감면율 ¹⁾	28.9	29.3	30	30	30
조정실적 ²⁾	0.4	3.7	4.6	1.7	2.1

주: 1)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세수 및 인구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평균 감면율 수치

2) 실제실적에 30/(연도별조정감면율)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30%)로 환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재산세) 감면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조정 감면실적은 7억원 수준
 - － (감면세목조정)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

[표 5] 재단법인(종교단체)의 의료시설 재산세 감면 실적 :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액	6.3	7.4	1.5	11.2	11.9
건수	175	185	41	134	146
조정실적 ¹⁾	4.8	5.6	1.5	11.2	11.9

주: 1) 2021년 이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2018~2020년 실적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다. 추계방법

-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감면율 인상) 2024년 일반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면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지 않음
 - 감면율 인상 효과를 고려할 때 실제 지방세수 감소규모는 동 비용추계 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3년 연장) 재단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어 기존에 종교단체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 비해 지방세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 일반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토대로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
- (취득세) 최근 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취득세 감면 실적은 증감이 불규칙하게 관찰됨을 고려하여 최근 5년('19~'23년)간의 연평균 실적(2.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재산세) 최근 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재산세 감면 실적은 증감이 불규칙하게 관찰됨을 고려하여 최근 5년('19~'23년)간의 연평균 실적(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라. 추계결과

-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3년간 총 28.5억원(연평균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38조 제4항)	-9.5	-9.5	-9.5	-28.5	-9.5
－ 취득세	-2.5	-2.5	-2.5	-7.5	-2.5
－ 재산세	-7.0	-7.0	-7.0	-21.0	-7.0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